

# 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	입찰보증금 회수 관련	<input type="checkbox"/> 입찰보증금을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도과했는지 여부, 학교에서 입찰보증금을 환수 할 수 있는 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찰보증금을 채권으로 볼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5년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 입찰보증금 환수를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
2	공사대금관련	<input type="checkbox"/> 계약내용과 달리 부족시공 및 도선료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발생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을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업체가 폐업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에 대해 수사의뢰 할 수 있는지 여부, 업체가 폐업한 상황에서 대표 이사에게 과다 지급된 공사 대금을 회수 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문서 위조로 보긴 어려우며 업체가 법인인 경우 폐업 신고를 했어도 법인 청산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의 재산을 압류해서 공사대금을 회수 할 수 있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	임대차 계약 관련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에서 A가 제3자가 2분의 1지분씩 공유한 건물에 관하여 그 공유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의 제 3자의 2분의 1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아 건물 전체를 소유하게 되자 교육청에게 자신이 새로 매수한 지분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연체 임차료의 납부를 촉구하고 있는 바, 교육청이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p>☞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 부동산 공유자들의 임대인들로서의 의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대법원 98다43137 판결) A는 위 건물 전체를 사용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A가 2분의 1지분을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그 낙찰로 인한 추가임차료 청구를 할 수 없음.</p> <p>☞ A는 추후 공동임대인 중 한 사람(B)에게 A가 낙찰받은 2분의 1지분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임.</p> <p>☞ 결론적으로, 교육청은 A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종전대로 계속 건물을 사용하기 바람.(새로운 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의무가 없음.)</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4	임대차 보증금 관련	<input type="checkbox"/> 임대인 2인이 분할채무관계인지 아니면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관계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대상자 판단 <input type="checkbox"/> 국외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절차 및 법률적 문제점 <input type="checkbox"/>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발생시점 및 소멸시효	<p>☞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2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에 대한 책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채무라고 판단됨. 다만 공동임대인은 일종의 ‘조합’으로 볼 수 있는바 만일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p> <p>(대법원 1995.08.11. 선고 94다 18638 판결) 즉 공동임대인의 임대차 행위가 영업행위인 ‘임대업’으로 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됨.</p> <p>☞ 현재 임차부동산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며, 임차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임의경매 진행 후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한해서 소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승소 후 임차보증금 반환 절차는 재산 관계 명시 신청 등을 통하여 채무자들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하면 됨.</p> <p>☞ 소송을 위해 교육청에서 취해야 할 사항은 별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 소송절차는 해외거주자인 경우 영사관을 통한 송달이 이루어지며 예상 소요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됨. 해외거주자의 국내 재산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p> <p>☞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한 1개월이 경과한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소멸시효 기한은 일반채권으로 10년에 해당됨.</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li> <li>☞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대방은 2011. 9경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A와 B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청은 A와 B를 상대로 또는 그 중 1인만을 상대로 보증금 3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i> <li>☞ 국외거주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국외송달 절차(민사소송법 제191조)를 거쳐야 하는데(국외송달의 경우 국내송달에 비하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합니다.) 만약 피고의 정확한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소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써 소송 진행이 가능</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p> <p>☞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임대물건의 소유권 변동시 같은 계약조건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을 임대인이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A의 지분을 양수한 B가 A의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하려면 그에 대한 B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계약조항이 있더라도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승낙을 하지 않으면 A에 대한 계약 위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B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이므로 A 또는 C 또는 A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선변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질의 하셨는데, 우선변제 효력은 귀 교육청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밖에 없으므로 근저당권을 유지하는 외에는 조치하실 것이 없습니다. 판결 승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는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 교육청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으므로 굳이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인 2명이 공유자인 이상 임대인 2명의 채무는 분할채무관계로 판단됩니다.</li> <li>☞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는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거주자들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송달 관계를 제외하고는 국내거주자들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li> <li>☞ 위 건물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3. 9. 15자로 만료되었으므로 2013. 9. 16.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할 것입니다.</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5	임의경매 종결관련	<input type="checkbox"/> 임의경매 종결 후 교육청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 <input type="checkbox"/> A가 임의경매 물건(B→C 이전된 지분)을 낙찰 받아 해당 사무실 전부를 소유할 경우 <input type="checkbox"/> A가 임의경매 물건(B→C 이전된 지분)을 낙찰 받지 못하여 1/2 지분만 소유할 경우	<p>☞ 공동임대의 경우 민법 제617조, 민법 제654조에 의해 연대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도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8. 12. 8.선고 98다43137판결)</p> <p>☞ 향후 소송은 3안에 따라 처리함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씨(C씨 승계)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에서 향후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3억 전체에 대해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A씨에 대해 근저당권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고, A씨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B지분에 관해서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있었고, 귀 교육청이 2순위 근저당권자인데, 1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면 그 지분에 관한 귀 교육청의 2순위 근저당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를 낙찰 받은 A는 귀 교육청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완전한 지분을 취득하므로 귀 교육청은 이를 제외한 최초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A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 A가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하고 낙찰로 인한 지분이전등기 즉시 가능합니다. 이전등기가 되어야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잔금 지급을 증빙할 서류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절차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서류들을 첨부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p> <p>☞ A가 낙찰을 원인으로 지분 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가압류를 하더라도 실익이 줄어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해 줄 경우 건물가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가액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 경매까지 갈 경우 어느 정도 그 차액이 줄어들지 알 수는 없으나 가압류의 실익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할 수 있고, A가 그 근저당권자가 대출 연기를 해주려면 가압류가 말소되어야 해서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압류를 해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가압류의 실익은 있습니다.</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저당권은 경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민사소송법 제608조) 할 것인바, 임의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C의 지분에 관한 귀청의 근저당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A가 C의 지분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C 지분에 설정된 귀청의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이상 귀청은 C의 낙찰 지분에 관하여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p> <p>☞ 그러나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43137 판결)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공동임대인인 A는 귀청에게 보증금 전액인 3억원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귀청은 보증금 전액의 변제를 위하여 A의 지분에 설정한 원소유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p> <p>☞ 만약 A에게 설정한 원소유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귀청은 일반채권자로서 A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기 이전에 또는 동시에 A의 일반재산(A가 낙찰 받은 C의 지분도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에 관하여 보전처분으로서 가류를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된 A의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본 건의 경우 말소 기준 근저당권은 C의 지분에 관해서만 설정된 근저당이므로, 그 후 교육청에서 지분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했더라도 교육청의 근저당권 중 채무자 C의 지분에 대한 표기만 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최고액도 1/2로 감축되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실무에서 1/2로 감축되는 변경등기가 경로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불가분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관계임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p> <p>☞ A가 C의 지분을 낙찰 받아 전체 소유로 될 경우에도 본래의 A의 지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A의 낙찰지분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시기는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 된 후에 가능합니다.</p> <p>☞ 낙찰부동산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종전 지분에서의 배당관계(잔존 A의 근저당으로 해소될 채무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는 자료)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실익은 구체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채무액 등과 종전 지분 낙찰가액 등을 비교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가압류 신청 시 예상 법률 비용은 추후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6	임차료 지급 관련	<input type="checkbox"/> 낙찰자(공유자 A)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낙찰 지분에 대해 사무실 퇴거 시까지 낙찰자 요구대로 교육청에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p>☞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 43137 판결)인바, 임대차보증금 상환 의무에 대응하는 임차목적물 사용 수익 의무 역시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 시 본 임차계약은 같은 계약조건으로 자동승계 하는 것을 임대인이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 귀청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공동임대인들에게 3억원의 보증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위 부동산이 경매가 되었다는 우연한 이유로 임차인이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은 3자가 아닌 A가 낙찰 받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귀청은 A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공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2분의 1지분을 공유한 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귀 교육청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A와 B의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A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귀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지분을 B로부터 C를 거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의무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귀 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교육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한다고 하여 부당이득을 하는 것이 없으므로,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7	학교법인 이사장 기소관련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 이사장 벌금형 약식기소에 따른 법률 자문 요청 -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에 의한 직무집행정지의 재량 행위성 여부 - 「행정절차법」 제35조의2에 의한 상당한 이유가 될 만한 사실의 존재 여부 - 「사립학교법」 제22조 제5호에 의한 공무원에 사립학교의 교직원 해당 여부 - 「사립학교법」 제23조 제3항 및 제25조 제4항에 의한 임원이 당해 법인에만 해당하는 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적용 사항이 아니며, 재량 적용으로 해석</li> <li>☞ 명백한 위반이므로 상당한 이유가 될 만한 사실은 없음</li> <li>☞ 사립학교 교직원도 해당된다는 근거는 전혀 없음</li> <li>☞ 당해 법인은 물론 다른 법인에도 해당된다고 해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량행위이나 기속재량으로서 정지시켜야 함이 타당</li> <li>☞ 사실이 비위를 인정한다면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 함</li> <li>☞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적으로도 구분되는 개념</li> <li>☞ 당해 법인에만 해당되지만 사실상 같은 법인이라면 불가</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li> <li>☞ 불복의 의사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음</li> <li>☞ 공무원에 사립학교 교직원인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li> <li>☞ 당해 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단</li> </ul>
		"	☞ 미회신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8	학교법인 수익용기본 재산 처분 관련	<input type="checkbox"/> 교육부의 시정처분 방법으로만 준수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관사 처분대금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증자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용기본재산 교지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용도변경 허가 적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처분청이 용도변경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환원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권취소시 소급효/비소급효 적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1997.9.23.이전에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	<p>☞ 교육부의 시정처분대로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p> <p>☞ 교육용기본재산인 관사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시키지 않고,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증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됨</p> <p>☞ 교지 기준을 미충족한 상태에서 용도변경 허가는 적절하지 않음</p> <p>☞ 처분청이 용도변경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환원 가능함</p> <p>☞ 직권취소시 비소급효 적용</p> <p>☞ 1997.9.23.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이 갖추어야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종전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임</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변경 행정행위를 직원으로 취소하고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하는 것은 용도변경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환원이라는 취지에서 시정명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시정명령의 문언상으로도 반드시 교비회계로 진출하는 방안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li> <li>☞ 교육부의 시정처분 취지는 용도변경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법적효과만이라도 처분이 없는 상태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것인 바, 관사 처분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수익용기본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은 위법한 용도변경 허가처분의 효과를 잔존시키는 것은 시정명령의 취지에 어긋나고 문언에도 배치됨</li> <li>☞ 답변 생략</li> <li>☞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9653 판결)고 할 것인바 기존의 용도변경 허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환원 가능</li> <li>☞ 답변 생략</li> <li>☞ 직권취소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기존처분의 취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의 충족 여부를 별도로 살필 필요 없음</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시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면 다른 방안(처분대금 법인회계로 진출 또는 처분청이 행정행위 직권취소 등)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음</li> <li>☞ 수익용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바, 관사 처분대금을 법인회계로 진출 가능</li> <li>☞ 교육용기본재산이 미달인 상태에서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li> <li>☞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처분은 가능</li> <li>☞ 직권취소시 소급효 없음</li> <li>☞ 1997.9.23. 전에 설립된 법인이라도 새로 정한 기준에 맞추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화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이 충족되어야 교육용재산으로 변경이 가능</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은 유효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교육부의 시정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관할 감독청으로서의 그 처분 후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전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이에 동등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li> <li>☞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의 처분행위 할 수 있으므로 법인회계로 전출 가능</li> <li>☞ 용도변경한 관사는 교지나 교사에 해당하지 않아 교지 기준 부족상태에서의 용도변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li> <li>☞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한 관할청의 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용도변경 신청으로 그 결의절차에서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인 처분이 되지 않는 한, 용도변경 허가처분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로 취소의 대상인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취소의 대상이 아님</li> <li>☞ 직권취소 대상이 아니므로 검토 생략</li> <li>☞ 답변 생략</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계약 해제되어 그 처분기한이 종료되었고, 처분허가액이 49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변동되는 이상 기존 처분허가는 효력 상실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처분허가를 해야된다고 판단됨.</li> <li>☞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되어도 당초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행정처분 자체는 유효하므로 현재에도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li> <li>☞ 학교이전사업 지연으로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매입한 학교용지에 부과된 세금은 매매대금(이전사업비)에서 납부할 수 없고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됨</li> <li>☞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음</li> </ul>
9	사립학교 이전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기존 처분허가에 대한 기한 연장인지, 새로운 처분허가인지 여부</li> <li><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처분허가일 경우 교육용기본재산인지, 수익용기본재산인지 여부</li> <li><input type="checkbox"/> 재산세 등 세금을 매매대금(이전사업비)에서 교육용기본재산에서 납부 가능한지, 학교법인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li> <li><input type="checkbox"/> 세금을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에서 납부 가능한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계약 해제되어 그 처분기한이 종료되었고, 처분허가액이 49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변동되는 이상 기존 처분허가는 효력 상실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처분허가를 해야된다고 판단됨.</li> <li>☞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되어도 당초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행정처분 자체는 유효하므로 현재에도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li> <li>☞ 학교이전사업 지연으로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매입한 학교용지에 부과된 세금은 매매대금(이전사업비)에서 납부할 수 없고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됨</li> <li>☞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음</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허가액이 변경되는 점,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 문언상 용도변경허가 없이 처분허가만으로 족한데 용도변경허가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존 처분허가에 대한 기한 연장보다는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li> <li>☞ 기한이 도래함으로 인하여 처분허가는 물론 용도변경허가까지 모두 실효되어 효력을 상실하여 종전에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된 기본재산은 다시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li> <li>☞ 재산세 등 세금을 어떠한 자금에서 납부할 지는 재량사항이라 판단됨</li> <li>☞ 세금은 이전사업 지연에 기인한 일종의 손해라고 할 것인바, 매매대금(이전사업비) 보다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번 처분허가가 되기만 하면 그 처분기한 도래 후 기한연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처분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에 어긋나고 처분허가액도 변경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새로운 처분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li> <li>☞ 처분허가가 실효되었으므로 다시 교육용기본재산이 됨</li> <li>☞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없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함</li> <li>☞ 계약해제로 받은 위약금에서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기한의 도과로 인한 실효라기보다는 일단 매각에 대한 허가도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새로운 매각행위에 대해 허가처분 필요</li> <li>☞ 용도변경한 행정처분은 유효하므로, 현재도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함</li> <li>☞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지연 등으로 면제에서 제외된 재산세 등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어도 위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li> <li>☞ 계약해제로 취득한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인 만큼 법인회계로 편입시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유도</li> </ul>
10	학교이전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미전입금에 대한 일시지급 청구 소송 가능 여부</li> <li><input type="checkbox"/> 도시공사의 세입 재원 가압류 가능 여부</li> <li><input type="checkbox"/> 000고 용지비 55억원 공탁처리 가능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전입금에 대한 일시지급 청구 소송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비 지급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땅값 소멸 시효는 중단되었을 가능성 있음</li> <li>- 인지대를 줄이는 측면에서 용지비 55억 상계후 175억원을 소송가액을 할 수 있음</li> <li>- 재판부 조정 시기는 1~1.5월 소요 예상, 재판부의 조정방식과 조정금액이 제시될 수 있음</li> </ul> </li> <li>☞ 도시공사의 자산 현황을 판단하여 가압류할 수도 있음</li> <li>☞ 공탁요건 미성립</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전입금에 대한 일시지급 청구 소송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청구소송은 가능, 우리교육청 합의 없는 연차별 지급은 법률적 효력 미발생</li> <li>- 민법상 지연이자를 포함한 청구소송 가능, 소송가액 중 55억원 상계처리 후 진행</li> <li>- 재판부 조정으로 일방적 패소없는 과실 상계 가능</li> </ul> </li> <li>☞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의 성격 상 가압류 불가할 수 있음</li> <li>☞ 공탁이자로 인한 손해 여부 판단 필요</li> </ul>
11	매입 부지 등기관련	<input type="checkbox"/> 토지대금 반환 또는 배상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매도인과의 매입면적과 관련하여 다툼(협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여부 및 과태료 부과 시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 여부	☞ 토지대금 반환 가능, 매도인과의 다툼 시 과태료 미 부과 가능, 매도인에게 청구 불가
		"	☞ 토지대금 반환 및 배상 가능, 시장에게 문의, 매도인에게 청구 불가
		"	☞ 토지대금 배상 가능, 과태료 부과 가능, 매도인에게 청구 불가
		"	☞ 토지대금 배상 가능, 과태료 부과 가능, 매도인에게 청구 불가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 용벽이 하자일 경우 토지대금 배상 가능, 과태료 부과 가능, 매도인에게 청구 불가
12	채권가압류 사무처리 관련	<input type="checkbox"/> 물품대금 중 일부금액만 채권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가능한지 여부 가) 가능 나) 불가능	☞ 가 안
		"	☞ 가 안
		"	☞ 가 안
		"	☞ 가 안
13		<input type="checkbox"/> 채권가압류 결정문 별지에 따른 학교별 가압류금액만 조치하면 되는지 여부 가) 별지에 따른 학교별 가압류 청구금액만 적용 나) 제3채무자 당사자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하여 적용	☞ 가 안
		"	☞ 나 안
		"	☞ 가 안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 가 안
		"	☞ 나 안
14	법원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 『OO초 외 17개교 체육관 증축 BTL사업』의 사업 시행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한 건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가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자 작성한 의견서 및 증빙서류의 검토를 요청	☞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가 부당한 것인 사실을 근거를 들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표현하여서 수정없이 제출하여도 됨
		"	☞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내직보강의 기술적 불가능여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여 보강할 필요 있음
		"	☞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할 사항없이 작성되었음, 작성한대로 제출하여도 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 의견을 검토한 결과 수정할 사항없이 작성되었음, 작성한대로 제출하여도 됨
		"	☞ 의견을 검토한 결과 수정할 사항없이 작성되었음, 작성한대로 제출하여도 됨
15	임대형 민자사업 처리 방안	<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자의 성과요구수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 불응 처리방안 - 사업시행자의 보완 의무 여부 및 과태료 등 관련법에 의거 제재 가능여부	☞ 사업시행자의 보완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제재 가능(과태료 부과 등)
		"	☞ 사업시행자의 보완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제재 가능(과태료 부과 등)
		"	☞ 사업시행자의 보완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제재 가능(과태료 부과 등)
		"	☞ 사업시행자의 보완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제재 가능(과태료 부과 등)
		"	☞ 사업시행자의 보완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제재 가능(과태료 부과 등)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input type="checkbox"/> OO교과서 구입현황 정보공개 청구건과 관련하여 특정 출판사의 교과용도서 판매현황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적용되는지 여부.	<p>☞ OO교과서의 판매량 등에 대한 정보는 보건교육포럼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며, 이는 중요한 영업비밀로 공개될 경우 보건교육포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p>
		"	<p>☞ 교과서의 구입현황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며, 이를 경쟁사에 해당되는 정보공개 청구인측에 공개할 경우 영업 및 판매전략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며 청구인에게 본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는 비공개로 결정해야 하며, 요청정보가 계약사항의 일부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공개정보에 해당 할 지라도 비공개로 보는 것이 타당함.</p>
		"	<p>☞ 정보공개 청구인이 보건교육포럼에 민원을 제기하여 비방 및 업무방해를 해온 점, 공공계시판에 수차례에 걸쳐 위 포럼의 재정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영업비밀의 공개로서 보건교육포럼이 피해를 볼 것임이 분명한 바, 비공개로 보는 것이 타당함</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7	OO초 담장 이전 관련	<input type="checkbox"/> OO초 담장 인접 빌라 건축 사용승인에 따른 통행로 확보위해 지적선과 맞지 않는 학교 담장 이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승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용 승인 어려움</li> <li>☞ OO동 OO-OO 현황도로는 도로로 지정·고시된 바 없  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있음</li> <li>☞ 학교담장을 지적선으로 이전 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고 보기 어려움</li> <li>☞ 주민들이 학교 담장을 지적선에 맞게 재시공하라고 요  구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승소가 예상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용승인 관련하여 사용승인관청 소관이므로 교육  지원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li> <li>☞ 건축법상 도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부분  은 담장 밖의 통로에 한정됨</li> <li>☞ 사실상 통행에 제공된 토지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민원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담장을 지적선까지 이전 강제할 수 없음</li> <li>☞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없음</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용승인 관련하여 사용승인관청 소관으로 판단됨</li> <li>☞ 학교 담장은 최소 30년 이상 현 위치에 있었으므로 현황도로는 담장 밖의 통로에 한정됨</li> <li>☞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담장을 지적선으로 이전 강제할 수 없음</li> <li>☞ 기존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인의 건축물 외에도 1984년경부터 건축허가 처리된 건이 다수 있으며, 당해 건축물에서의 출입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므로 관할구청에서 사용허가 받을 수 있을 것임</li> <li>☞ 학교 담장 안쪽부분은 최소 30년이상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현황도로라 할 수 없음</li> <li>☞ 만약 통행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것이라면 학교 담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유지할 수 있음</li> <li>☞ OO구를 상대로 사용승인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8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질의	<input type="checkbox"/> 보건교과서 정보공개 청구 건(2011~2014년도 OO보건교과서 초·중 공급 부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지 자문	<p>☞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행정기관이 취득한 보건교과서의 구입현황(판매부수, 금액)이 해당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또한 판례 및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비공개로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p>
		"	<p>☞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행정기관이 취득한 보건교과서의 구입현황(판매부수, 금액)이 해당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또한 판례 및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비공개로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행정기관이 취득한 보건교과서의 구입현황(판매부수, 금액)이 해당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또한 판례 및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비공개로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19	보건교사 복무규정 위반 관련	☐ 보건교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와 관련하여 ①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위반여부 ②공무원의 알선행위 금지 위반 여부 ③공무원의 금품수수 해당 여부 ④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여부 ⑤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위반여부 ⑥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알선행위 금지 위반은 해당됨 ☞ 공무원의 알선수취 여부는 해당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해당됨
		"	☞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알선행위 금지 위반은 해당되지 않음 ☞ 공무원의 알선수취 여부는 해당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해당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알선행위 금지 위반은 해당되지 않음</li> <li>☞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및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위반여부 해당되지 않음</li> <li>☞ 공무원의 알선수뢰 여부는 해당되지 않음</li> <li>☞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해당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영리업무에는 해당됨</li> <li>☞ 알선·청탁·금품수수에는 해당되지 않음</li> <li>☞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해당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알선행위 금지 위반은 해당됨</li> <li>☞ 공무원의 알선수뢰, 직위의 사적 이용,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위반에 해당됨</li> <li>☞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해당됨</li> </ul>
20	항소여부 의견	<input type="checkbox"/>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851호)과 관련하여 우리청이 패소하여 1. 법률적인 논쟁사항과, 2. 고등법원 항소 여부 의견에 관하여 문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동일한 소송건(대법원 2013두15774호)으로 대법원에 사건 진행중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심 판결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의 입법목적과 그 적용 범위가 다르고, 현재 동일한 소송건(대법원 2013두15774호)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법원 판결의 결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위 소송건의 행정심판 당시 국제표준무도(블룸댄스) 과정의 경우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1	OO유치원 행정소송 관련	<input type="checkbox"/>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이 적절한 제안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여부 <input type="checkbox"/> '수신자 OO유치원장'의 공문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는 것의 절차상 하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조정권고안 수락 후 번복가능 여부	☞ 조정권고안 수용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 법적인 불이익 없음 ☞ 공문 취소 후 원고를 수신자로 하여 새로이 처분 가능 ☞ 번복불가
		"	☞ 크게 부당하지 않음 ☞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다시 공문을 보내도 실익이 없음 ☞ 번복불가
		"	☞ 미회신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2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질의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행하였을 경우 공익법 제19조1항에 의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면 고발대상이 해당법인인지, 아니면 이사장 및 이사들이 되는지?	<p>☞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정관에도 없고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행하였을 경우 공익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p> <p>☞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제3항 규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법률 제19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이사나 감사 및 그 공익 법인이 고발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p>
		"	<p>☞ 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됨은 당연합니다.</p> <p>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행위자 뿐만 아니고 해당 공익법인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공익법 인과 해당행위를 한 이사(이사회 결의를 거쳐 승인 없이 수익행위를 한 것이라면 결의에 참여한 이사 전원)가 피고발자입니다.</p>
23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질의	<input type="checkbox"/> 계약체결 시에 공익법인이 제출한 정관이 주무관청인 우리교육청이 승인해 준 정관과 다른 정관으로 행사하였을 경우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p>☞ 공익법인이 계약체결 시 제출한 정관이 주무관청이 승인해준 정관과 다른 정관으로 행사하였을 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정관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공익법인의 정관 그 자체는 공문서라고 할 것은 아니며,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행위에 정관이 부속서류로 첨부된다고 하여 해당정관을 공문서로 볼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공익법인 신청 또는 허가당시의 정관과 내용이 다른 정관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정관은 사문서로 보아 사문서 위조의 죄책은 물을 수 있겠으나,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정관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해당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p>
24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질의	<p>☐ 공익 사단법인의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이 이사회나 사원총회 의결없이 무단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불법 수익사업을 위한 계약서류로 정관을 타 기관에 제출하였다면, 법인의 정관을 사인인 이사장이 불법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므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한 경우로 보아 이사장에게 사문서 위조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p>	<p>☞ 이사장이 법인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됩니다.</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5	공익법인 설립운영 관련	<p>□ 공익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되는데 당연직 임원이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당연직 이사를 해임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시점이 해임일자가 되는지, 아니면 당연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이 해임일이 되는지?</p> <p>등기증명서에는 주무관청의 해임 승인이 있을때까지는 유효한 등기 이사로 되어 있는데 등기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사의 자격이 유지되어 이사회를 소집해서 의결하는 것이 유효한 것인지?</p>	<p>☞ 공익법인의 이사의 자격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지만 그 이사가 그 당연직에서 물러날 경우 이사에서 해임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연직에서 물러나거나 당연직의 직명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그 이사는 계속 이사인 것이고 별도의 해임조치가 없는 이상 당연히 해임되는 것이 아닙니다.</p>
		"	<p>☞ 공익법인 당연직 이사에 대한 해임 효력 발생시기는 당연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이고, 등기는 대항요건일뿐입니다.</p>
		"	<p>☞ 공익법인의 당연직 임원이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당연직 이사를 해임하게 되었을 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시점이 해임일자가 된다고 판단됩니다.</p> <p>☞ 등기증명서에는 주무관청의 해임 승인이 있을때까지는 유효한 등기 이사로 되어 있는데 등기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사의 자격이 유지되어 이사회를 소집해서 의결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6	아파트관리실동 내부시설 학원 관련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관리실동 내부시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받고 강사2명을 고용하여 학원등록을 하지 않고 국어, 수학을 학생들에게 월1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교습한 경우, 그 징수한 교습비를 강사료와 전기료로 전액 지출되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무등록 학원운영으로 고발할 경우 고발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p>☞ 가의 답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호 사목에 의거 아파트 관리실동 내부시설에서 강사2명을 고용하여 국어, 수학을 학생들에게 월15만원 수강료를 받고 교습한 행위는 입주민을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고, 징수한 교습비를 강사료와 전기료로 전액 지출되었다고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함.</p> <p>☞ 나의 답변 : 무등록 학원운영으로 고발할 경우 고발대상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대표자:회장)로 함이 타당.</p>
2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input type="checkbox"/>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호 사항 조항에 의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로 징수한 교습비를 강사료와 전기료를 전액 지출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로 징수한 교습비로 강사료와 전기료를 전액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8	개인과외교습자 불법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에 위와 같이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가 해당되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만약, 위 사안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면, 관할청이 행정처분만 내리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을 때 관련 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input type="checkbox"/> 학원법 정의 및 취지를 보았을 때 채용된 강사를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볼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한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li> <li>☞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li> <li>☞ 채용된 강사가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학습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li> <li>☞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건의 별개의 사안으로 귀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li> <li>☞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가 아닌 교습자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학습자로부터 교습의 대가로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과외교습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의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외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li> <li>☞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답변 생략</li> <li>☞ 채용된 강사는 수강생으로부터 교습비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li> </ul>
29	초등학교 통학구역	<input type="checkbox"/> A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B초등학교 통학구역내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위장전입 학생에 대하여 강제 전학을 시켜야 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학생이 통학구역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한다면 별도의 강제 전학 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에서는 초등학교의 전학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장전입의 경우 일단 강제전학 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A초등학교 통학구역내의 주소지로 이사를 한 이상 계속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있음.</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0	OO교회 재단법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OO교회가 직접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이재단법인기독교OO인천교회가 발급한 총회소속증명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 OO 인천교회가 사립학교법 제2조 3항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p>☞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상 사립학교경영자는 공공단체, 법인, 자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인바, OO인천교회는 재단법인 기독교OO의 소속단체에 불과하고 재단법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다.</p>
31	사립유치원 교육재산 관련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의 교육재산(교지 및 교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설립·경영자의 관계가 부부일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형태를 자가소유 유치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차 유치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p>☞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민법 제830조 제1항), 사립유치원의 교육재산(교지 및 교사)이 비록 배우자 명의리라 할지라도 법률상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니므로 임대차 유치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p>
		"	<p>☞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면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교육재산(교지 및 교사)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설립주체가 동일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그 등기부상 소유자와 설립주체의 관계가 부부라 하더라도 그들이 동일인임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그러한 사립 유치원의 설립형태를 자가소유 유치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 설립경영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등기청구소송등의 절차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자가소유 유치원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 사용유형에 따라 임대차(유상) 또는 사용대차(무상)관계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	☞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와 사립유치원의 교육재산(교지 및교사)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부부일경우라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설립형태를 자가 소유 유치원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됨
32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OO보건교과서 구입현황 정보공개 청구건과 관련하여 특정 출판사의 교과용도서 판매현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부합 여부	☞ 보건교과서 구입현황(판매부수, 금액)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며, 이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이 타당함
		"	☞ 보건교과서의 구입현황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며, 이를 경쟁사에 해당되는 정보공개 청구인 측에 공개할 경우 영업 및 판매전략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며 청구인에게 본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는 비공개로 결정해야 함이 타당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정보공개 청구인이 보건교육포럼에 민원을 제기하여 비방 및 업무방해를 해온 점, 공공게시판에 수차례에 걸쳐 위 포럼의 재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영업 비밀의 공개로서 보건교육포럼이 피해를 볼 것임이 분명한 바, 비공개로 보는 것이 타당함</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3	OO초 교육환경개선공사	<input type="checkbox"/> 채권압류금액이 공사 준공금액보다 상회하여 하도급 직불업체와 채권자들간의 경합으로 공사대금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직접지급합의일이 채권압류 송달일자보다 우선하면, 후착한 채권압류에 상관없이 하도급직불 업체에 직접지급이 가능한지여부	<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하도급법 ‘이라 함)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 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20083판결 등 참조)는 법리의 반대해석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당해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법상 직불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압류채권자와 공급사업자 사이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보면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제1항(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공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공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당해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p> <p>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각 하도급업체들과의 직접지급합의가 각 압류일 이전에 성립된 이상 압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하도급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둬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명령을 송달받는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채권압류금액이 공사준공금액보다 상회하여 하도급 직불업체와 채권자들 간에 경합되어 있는 경우 직접지급 합의일이 채권압류 송달일자보다 우선한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고, 후착한 채권압류와 상관없이 하도급 직불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8.2.29. 선구 2007다 54108 판결)</p> <p>따라서 질의하신 채권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직접 지급을 받기로 한 업체가 공사를 수행한 부분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 지급 약정이 우선하나 공사를 수행한 부분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우선할뿐 그 외에는 압류가 우선하게 됩니다.</p> <p>질의 사안의 공사기성기간은 2014.9.2.부터 9.30.까지이고, 압류 송달일은 2014.8.13. 같은 해 8.29. 같은 해 10.7.인바, 정상적으로 공사가 2014.9.2.부터 9.30.까지 진행되었다면 2014.10.7.자 압류보다는 직접지급약정이 우선하나, 2014.8.13.자 및 8.29.자 압류에는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p>위 직접 지급약정을 채권양도 및 그에 대한 승낙으로 보더라도 위 약정이 확정일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위 대법원 판례)</p> <p>따라서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 공탁처리</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input type="checkbox"/> 보건교과서 구입현황(판매부수, 금액)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해당유무 <input type="checkbox"/> 보건교과서 구입현황(판매부수, 금액)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비밀에 해당할 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여부	<p>☞ 보건교과서 구입현황(판매부수, 금액)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됨</p> <p>☞ 보건교과서 구입현황(판매부수, 금액)은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p>
		"	<p>☞ 보건교과서 구입현황(판매부수, 금액)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됨</p> <p>☞ 보건교과서의 사용량, 판매량 등 경영정보는 영업비밀로서 판매시장의 선택이나 영업전략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며, 이를 경쟁사에 공개할 경우 영업 및 판매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본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고, 그 외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없으므로 비공개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교과서 구입현황(판매부수, 금액)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됨</li> <li>☞ 보건교과서의 구입현황(판매부수, 금액)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및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도 아니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경쟁자로서 수십차례 민원 제기, 안티카페 운영 등으로 피청구인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바, 공개 시 피청구인이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므로 공개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li> </ul>
35	인천시 초중고 운영위원연합회 정관해석	<input type="checkbox"/> 해당법인의 사업활동(인천관내학교우수식 재료공급을 위한 공급업체 실태조사 공고 실시)과 관련하여 정관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해당법인의 설립목적과 이 실태조사와는 직·간접적인 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정관의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6	행정소송 항소여부 의견	<input type="checkbox"/>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신청 반려처분취소 패소판결에 따른 항소여부 의견 요청 의뢰	☞ 항소 제기 의견
		"	☞ 항소 실익이 없음(패소판결 수용)
37	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input type="checkbox"/> 급식 식재료(공산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입찰시 현품 설명서의 식품 설명란에 특정상호와 규격을 제시한 것이 법규 위반인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6)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소액수의 견적 입찰시 특정상표, 규격의 제품을 제시한 것은 법규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38	학교급식계약업체 대금지급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본교 학교급식계약업체(유진미트)와 관련된 제3채무(2014타채 383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추심이 들어온 바, 채권자 청구서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서류 검토 요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고 제3채무자인 인천광역시교육청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상 제3채무자(소관 인천부원초등학교)로서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거둬 내려진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9	민원에 대한 자문	<input type="checkbox"/> 정보 공개 답변으로 인한 향후 전개 방향 및 대책에 대해서 자문 요망 - “성추행, 학교폭력사건” 과 관련된 피해학생(***)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하여 1) 사건발생 신고서(학교측 전담기구에 접수된 신고서) 2) 학교가 수사기관(117)에 “신고한 문건” (신고내용 기재) 3) 수사기관(117) “현장조사 기록” 4) 117측 “조치결과” (수사기관에서 학교측에 통보한 조치결과)	☞ 요청받은 내용에 대해 모두 공개
		"	☞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므로 전부 비공개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등에 대한 내용은 그 결과를 문서로 관리하거나 송부받은 것이 아닌 이상 공개할 정보가 없다고 통지
		"	☞ 관련 학생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제공할 의무가 없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40	원어민 주택보증금 관련	<input type="checkbox"/> 원어민 주택 보증금 회수와 관련한 관련 근거 및 법령, 보증금 회수에 따른 행정절차 자문	<p>☞ 보증금 전액 반환에 따른 법률적 근거나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 받을 수 있음.</p> <p>☞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행정절차는 없으며,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은 민사관련 소송임.</p>
41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input type="checkbox"/>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 일련의 절차에 대한 적법성 검토 <input type="checkbox"/>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 작성내용에 관한 법적 검토 <input type="checkbox"/>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향후 행정절차에 관한 자문	<p>☞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로 보임</p> <p>☞ 답변서(안)으로 제출해도 무방할 것임</p> <p>☞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면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거나 이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할 것이며,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그 재결은 행정청을 기소속하게 되므로 동일한 처분을 할수 없게 됨</p>
		"	☞ 답변서(안)으로 제출해도 무방할 것임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42	공사비 지출 관련	<input type="checkbox"/> 계약대상자의 지연배상금을 하도급업체의 직불 합의금 지출시 상계가능 여부	<p>☞ 상계적상에서 있는 한 상계를 할 수 있는데 상계적상이란 ①상계하려는 채권과 상계당하는 채권이 동종일 것 ②양측의 채권이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을 것 ③상계가 금지되는 경우가 아닐 것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대상자가 공사를 지체하여 귀 학교는 하도급업자의 귀 학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계약대상자의 귀 학교의 채권의 범위 내에서 계약대상자에게 지급할 것을 편의상 직불한다는 것이므로 귀 학교는 계약대상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도급업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바 따라서 귀 학교의 지연배상금 채권과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계약대상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p> <p>계약대상자 및 하도급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연배상금의 액수 및 계산 근거를 적고,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계약대상자에게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특정하여 기재한 후 지연배상금 채권과 위 공사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배달증명으로 발송한 후 배달된 증명서를 수령하여 보관.</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수급사업자가 직불합의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청구를 한 때에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과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직불합의의 대상이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상계할 채권이 발생한 경우 외에는 원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상계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p>
		"	<p>☞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대상자의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상계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p>☞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체상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 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에 의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직불합의금 지급시 지연배상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직불합의금 지급시 계약대상자의 지연배상금을 상계처리 할 수도 있음.</p>